

## < 희망사다리 | 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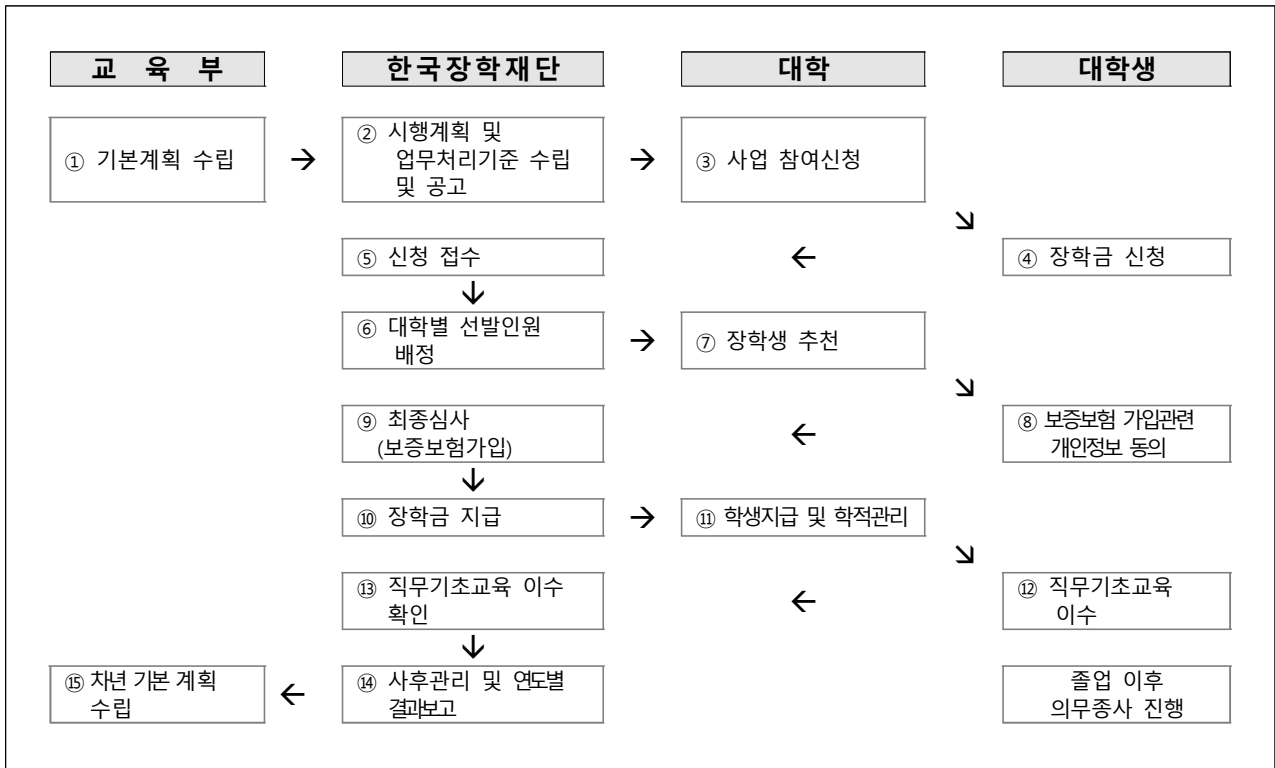
### 1] 사업 개요

#### I. 사업개요 - 2. 지원대상 부분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2. 지원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2. 지원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글로벌 대학(다중학사제)의 경우 학사 과정은 일반대,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 기준 적용	p.1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제한 대상 표>  ■ 2024년 대학평가(대학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5학년도 학 자금 지원 제한 대학('24.12.13.기준, 교 육부) ※ 2025학년도 학자금지원 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을 받은 대학의 경우, 장학금 최종지급일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장학금 지원 가능 단, 지급 이후 대학이 본안 소송 패소 시 기지급한 장학금 반환  ∴ ■ 과거 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I,II유형) 환수 대상자 중 잔여 환수대상 금액이 남아있는 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제한 대상 표>  ■ 20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6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 상에서 제외 ※ 2026학년도 학자금지원 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을 받은 대학의 경우, 장학금 최종지급일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장학금 지원 가능 단, 지급 이후 대학이 본안 소송 패소 시 기지급한 장학금 반환  ∴ ■ 과거 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I,II유형) 환수 대상자 중 잔여 환수대상 금액이 남아있는 자 (신청 마감일 기준)	p.2

#### I. 사업개요 - 2. 참여대학 의무사항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운영 절차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운영 절차 >  절차도 수정(기본계획 절차도로 수정)	p.4



## ② 사업 참여 신청

### II. 사업 참여 신청 - 2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표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학년 입력 부분>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만 지원함에 따라 학년 입력 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학년 입력 부분>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만 지원함에 따라 학년 입력 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 글로컬 대학(다층학사제)의 경우 학사 과정은 일반대,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 기준 적용	p.9

## ③ 장학금 심사 및 지급

### III. 장학생 심사 및 지급 - 1. 장학생 추천 부분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input type="checkbox"/> (학적기준)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범위(①, ②)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input type="checkbox"/> (성적기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	<input type="checkbox"/> (학적기준)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범위(①, ②)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혜금액 기준) 등록금 최소 1원 이상 발생 시 지원 가능 <input type="checkbox"/> (성적기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	p.12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p> <p>□ (수혜횟수) 선발 학기 소속학과 학년 제별로 장학금 수혜 횟수</p>	<p>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p> <p>□ (수혜횟수) 선발 학기 소속학과 학년 제별로 장학금 수혜 횟수</p>	

### III. 장학생 심사 및 지급 - 1. 장학생 추천 부분 - <수혜 횟수> 표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수혜횟수 표	수혜횟수 표 문구 추가	p.13

#### < 학제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횟수 >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일반대	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①)	-	-	4회	6회	8회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②)			8회	10회	12회
전문대	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①)	2회	4회	6회	8회	10회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②)	4회	6회	8회	10회	12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최대 2회로 산정함

※ 글로벌 대학(다층학사제)의 학사과정은 일반대,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 기준 적용

### III. 장학생 심사 및 지급 - 1. 장학생 추천 - (2) 대학별 신규장학생 추천 - □ (필수사항)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학생 성적, 학생 취·창업의지, 저소득층 우대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되, 배점 및 세부 항목 (배점)은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p.13

### III. 장학생 심사 및 지급 - 1. 장학생 추천 - (3) 계속장학생 심사 - '자격상실' 표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 반환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 유예(학위 취득 유예) 등 학교에 적(籍)만 두고 있는 경우 자격 상실되며, 수혜금액에 대한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li> <li>○ 제적·자퇴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에는 의무종사 불가하며 기수혜금액 전액 반환</li> </ul>	<p>□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 반환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졸업 유예(학위 취득 유예) 등 학교에 적(籍)만 두고 있는 경우 자격 상실되며, 수혜금액에 대한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del></li> <li>○ 제적·자퇴: 의무종사 불가하며 기 수혜 금액 전액 반환</li> </ul>	p.16

### III. 장학생 심사 및 지급 - 3. 대학 지급 - □ 대학 수납계좌 등록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계좌 개설) 대학은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사업” 전용 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li> <li>-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li> <li>- 전용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li> <li>- 장학금의 정상 지급을 위해 대학 계좌의 임시휴면 여부 등 확인 필수</li> <l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유형)을 포함한 모든 타 장학금 계좌와 분리된 수납계좌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계좌 개설) 대학은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사업” 전용 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li> <li>-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li> <li>- 전용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li> <li>- 장학금의 정상 지급을 위해 대학 계좌의 임시휴면 여부 등 확인 필수</li> <l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유형)을 포함한 모든 타 장학금 계좌와 분리된 수납계좌 필요</li> <li>※ 다수 캠퍼스 운영 대학일 경우, 캠퍼스별 분리된 희망사다리 I 유형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 필수</li> </ul>	p.18

### III. 장학생 심사 및 지급 - 4. 학생 지급 - □ 장학금 지급 유의사항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연불가)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록금 + 취창업지원금) 반환</li> <li>○ (차액지급 허용)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 장학생은 전액 지급 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연불가)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록금 + 취창업지원금) 반환</li> <li>○ (차액지급 허용)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해당 학기에 지급된 타 장학금에 대하여 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장학생은 전액 지급 원칙</li> <li>※ 단, 등록 후 휴학 등에 따른 재단 내 타 장학금이 이연된 경우 차액지급 불가(희망사다리 I 유형 장학금 수령 전 이연장학금 반환 원칙)</li> </ul>	p.20

### III. 장학생 심사 및 지급 - 5.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 (1)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5.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p> <p>(1)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p> <p>□ (정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li> </ul>	<p>5.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p> <p>(1)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p> <p>□ (정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 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li> </ul>	p.21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장학사업 참여 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 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p> <p>※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타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p> <p>&lt;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판단 기준 &gt; 표</p>	<p>장학사업 참여 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 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p> <p>※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타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p> <p>※ 상세 내용은 붙임 5. 2026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참조</p> <p>&lt;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판단 기준 &gt; 표 삭제</p>	

**<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판단 기준 >**

사업명	중복참여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p>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p> <p><del>의무종사 완료 혹은 장학금 반환 이후에는 가입 가능</del></p>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p>희망사다리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사업 동시 참여 불가</p> <p><del>의무종사 완료 혹은 장학금 반환 이후에는 사업 참여 가능</del></p> <p><del>세부 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에 따름</del></p>

**4 장학생 의무사항**

IV. 장학생 의무사항 - 1. 의무종사 이행 - (1) 의무종사 개요 - □ (의무종사)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 (의무종사) 의무종사란,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 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는 것</p>	<p>□ (의무종사) 의무종사란,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 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는 것</p> <p>* 졸업 유예, 수료 포함</p> <p>※ 전체 페이지 졸업유예, 수료 문구 통일</p>	<p>p.3</p> <p>p.6</p> <p>p.16</p> <p>p.23</p> <p>p.25</p> <p>p.26</p> <p>p.27</p> <p>p.28</p> <p>p.30</p> <p>p.31</p> <p>p.34</p> <p>p.40</p> <p>p.41</p> <p>p.42</p> <p>p.50</p> <p>p.52</p>

IV. 장학생 의무사항 - 1. 의무종사 이행 - (2) 의무종사 인정 - □ 의무종사 인정 기업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b>중 매출액 5천억 미만</b>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del>중 매출액 5천억 미만</del>	p.24

IV. 장학생 의무사항 - 1. 의무종사 이행 - (2) 의무종사 인정 - □ 의무종사 이행 기준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 매출액 765,444원	【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 <del>매출액 820,556원으로</del> <b>현행화,</b> <b>인정 예시 표 및 문구 명확화</b>	p.25

IV. 장학생 의무사항 - 1. 의무종사 이행 - (2) 의무종사 인정 - □ 의무종사 기업 인정 기준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 의무종사 기업 인정 기준 ○ (기준 시점) 의무종사 대상기업 여부는 ① 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일 이후의 ② 최초 입사 시점의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함 - 신규장학생 선발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장학생 선정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였으나 이후 매출액 기준 초과 또는 대기업으로 재분류된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으로 계속 인정함 - 매출액 기준 초과 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취업하였으나, 이후 중소 중견기업으로 재분류된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의무종사 기업 인정 기준 ○ (기준 시점) 의무종사 대상기업 여부는 ① 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일 이후의 ② 최초 입사 시점의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함 - 신규장학생 선발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장학생 선정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였으나 이후 <del>매출액 기준 초과</del> 또는 대기업으로 재분류된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으로 계속 인정함 - <del>매출액 기준 초과 기업</del> 또는 대기업으로 취업하였으나, 이후 중소 중견기업으로 재분류된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p.26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 style="text-align: center;">&lt;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 &gt;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은 의무종사 인정</li> <li>- 개업·기업분할 등으로 인하여 최근 3개년 매출액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최근 1개년 또는 2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li> </ul> </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종사 인정 제외</li> </ul> </li>   <li>■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li> <li>- 지방공공기관통합공사(www.d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li> </ul> </li>   <li>■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공기관통합공사(www.d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 &gt;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소·중견기업(※ '25년 졸업자까지 적용, '26년 졸업자부터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은 의무종사 인정</li> <li>- 개업·기업분할 등으로 인하여 최근 3개년 매출액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최근 1개년 또는 2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li> </ul> </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따라 지정된</u>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공공기관</del> <del>경영정보</del> <del>공개시스템</del> (www.alio.go.kr)에서 <del>공시한</del>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지점 등)을 포함하여 <del>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del> 기관은 모두 의무종사 인정 제외</li> </ul> </li> </ul>	<p>p.27</p>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 4. 지원 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 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li> <li>*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li> </ul>	<p>■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 4. 지원 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 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li> <li>*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li> <li>※ 단,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에 따라 수탁사업자로 지정되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행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직인정기업으로 분류</li> </ul>	p.27
<p>■ 창업인정 제외 업종 (☞붙임 4. 지원 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인정제외 업종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부동산(임대업), 중고물품판매,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그 외 재단에서 정하는 창업 인정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참고) 등</li> <li>-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 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li> <li>*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li> </ul>	<p>■ 창업인정 제외 업종 (☞붙임 4. 지원 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인정제외 업종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부동산(임대업), 중고물품판매,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그 외 재단에서 정하는 창업 인정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참고) 등</li> <li>-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 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li> <li>*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li> <li>※ 단,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에 따라 수탁사업자로 지정되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행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직인정기업으로 분류</li> </ul>	p.27

IV. 장학생 의무사항 - 1. 의무종사 이행 - (2) 의무종사 인정 - □ 의무종사 기업 인정 서류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lt;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수기 심사 서류 &gt; 재직확인 - 상용근로 부분</p> <p>○ 4대 보험 직장 가입 서류 ('24년 이후 졸업자)</p> <p>- (서류 中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p> <p>-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 증명서를 통해 재직 확인 가능</p>	<p>&lt;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수기 심사 서류 &gt; 재직확인 - 상용근로 부분</p> <p>○ 4대 보험 직장 가입 서류 ('24년 이후 졸업자)</p> <p>- (서류 中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p> <p>-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 증명서를 통해 재직 확인 가능</p> <p>※ '23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연도 업무 처리기준에 근거한 증빙서류 필요</p>	p.28

IV. 장학생 의무사항 - 1. 의무종사 이행 - (3) 의무종사 유예 - □ (추가유예) 부분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 (추가유예) 질병·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폐업으로 의무종사 기간의 추가유예가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재단 승인으로 유예 가능</p> <p>○ 추가유예기간 : 신청 사유별 상이</p> <p>○ 모든 추가유예 사유는 장학생 선발 이후 발생하여야 하며, 장학생 선발일 전 또는 유예만료일 경과 이후 추가유예 신청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유예 인정 불가</p> <p>- 장학생 선발일 ~ 유예만료일 사이에 추가유예 사유가 발생하여야 함</p>	<p>□ (추가유예) 질병·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폐업으로 의무종사 기간의 추가유예가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재단 승인으로 유예 가능</p> <p>○ 추가유예기간 : 신청 사유별 상이</p> <p>○ 모든 추가유예 사유는 장학생 선발 이후 발생하여야 하며, 장학생 선발일 전 또는 유예만료일 경과 이후 추가유예 신청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유예 인정 불가</p> <p>- 장학생 선발일 ~ 유예만료일 사이에 추가유예 사유가 발생하여야 함</p> <p>※ 단, 의무종사대상자 지정 전 추가유예 사유가 해소되어 실질적인 의무종사 이행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추가유예 인정 불가</p>	p.31
<p>※ 모든 추가유예 사유는 장학생 선발일 이후 발생하여야 함</p>	<p>중복문구로 삭제</p>	

IV. 장학생 의무사항 - 1. 의무종사 이행 - (3) 의무종사 유예 - <추가유예 상세기준> 표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lt;암 인정 기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 진단일이 장학생 졸업(유예)일 ~ 유예 만료일 사이로 확인되어야 함</li> </ul>	<p>&lt;암 인정 기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 진단일이 장학생 <b>선발일</b> ~ 유예 만료일 사이로 확인되어야 함</li> </ul>	
<p>&lt;중증난치질환 인정 기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난치질환 진단일이 장학생 졸업(유예)일 ~ 유예만료일 사이로 확인되어야 함</li> </ul>	<p>&lt;중증난치질환 인정 기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난치질환 진단일이 장학생 <b>선발일</b> ~ 유예만료일 사이로 확인되어야 함</li> </ul>	
<p>&lt;심사 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종사 추가유예 심사는 신청일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li> <li>- 동일 사유로 추가유예를 반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심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함</li> </ul>	<p>&lt;심사 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종사 추가유예 심사는 <b>의무종사 추가유예</b> 신청일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li> <li>- 동일 사유로 추가유예를 반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심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함</li> </ul>	p.32
<p>&lt;기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1명에 대하여 임신 사유 1회, 출산 사유 1회 신청 가능</li> <li>○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무종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유예 심사 및 검토 요청 가능</li> <li>- 단, 교도소 입소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유는 심사대상에서 제외</li> <li>○ 폐업 사유의 추가유예는 '취업지원형' 장학생에 한함</li> </ul>	<p>&lt;기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1명에(<b>다태아의 경우 1명으로 산정</b>) 대하여 임신 사유 1회, 출산 사유 1회 신청 가능</li> <li><del>○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무종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유예 심사 및 검토 요청 가능</del></li> <li><del>- 단, 교도소 입소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유는 심사대상에서 제외</del></li> <li>○ 폐업 사유의 추가유예는 '취업지원형' 장학생에 한함</li> </ul>	

IV. 장학생 의무사항 - 2. 직무기초교육 이수 부분 '직무기초교육' 관련 표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 제출 경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이수보고서 제출→ 내용확인 선택→ 해당 학기 이수보고서 업로드</p>	<p>▶ 제출 경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내용확인 선택→ 해당 학기 이수보고서 업로드</p>	p.36
<p>▶ 실시 경로 : 관리자 포탈 접속→ 장학→ 희망사다리장학금→ 계속장학생 관리→ 이수 보고서 관리→ 연도·학기·회차 선택 후 조회</p>	<p>▶ 실시 경로 : 관리자 포탈 접속→ 장학→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계속장학생 관리→ 이수 보고서 관리→ 연도.학기.회차 선택 후 조회</p>	

IV. 장학생 의무사항 - 2. 직무기초교육 이수 -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증빙 안내' 표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lt;직업심리 검사&gt;                      인증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워크넷                      ② (워크넷) 직업선호도검사, 구직준비도 검사, 창업적성검사 등                      - [경로] 워크넷 홈페이지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 워크넷 이용 시 증빙자료에 성명 등 정보기입 여부 확인 필요(아이디 입력 등 정보 오기재 시 인정 불가)</p>	<p>&lt;직업심리 검사&gt;                      인증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고용24                      ② (고용24) 직업선호도검사, 구직준비도 검사, 창업적성검사 등                      - [경로] 고용24 홈페이지 - 취업지원 - 취업가이드 - 직업심리검사                      ※ 고용24 이용 시 증빙자료에 성명 등 정보기입 여부 확인 필요(아이디 입력 등 정보 오기재 시 인정 불가)</p>	p.36
<p>&lt;자격증 취득&gt;                      ○ 신규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                      - 신규자격증 : 최종합격만 인정. 합격일 또는 취득일 기준                      - 어학 점수 : 성적증명서 상 응시일이 이수기간 내여야 함</p>	<p>&lt;자격증 취득&gt;                      ○ 신규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                      - 신규자격증 : 최종합격만 인정. 합격일 또는 취득일 기준                      - 어학 점수 : 성적증명서 상 응시일이 이수기간 내여야 함                      ※ 시행기관이 발급한 서류만 인정</p>	
<p>&lt;자기계발 강의수강&gt;                      ○ 자기계발 강의(온라인, 오프라인), 재단 추천 강의                      - 수강 확인 서류(수강증, 수료증 등)가 발급 가능한 강의만 인정                      - 강의시작일이 이수기간 내여야 함                      - 수강증이 아닌 단순 계산 영수증은 인정 불가함                      ※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필요</p>	<p>&lt;자기계발 강의수강&gt;                      ○ 자기계발 강의(온라인, 오프라인), 재단 추천 강의                      - 수강 확인 서류(수강증, 수료증 등)가 발급 가능한 강의만 인정                      - 강의시작일이 이수기간 내여야 함                      - 수강증이 아닌 단순 계산 영수증은 인정 불가함                      - OJT 등 사내 교육의 경우 자기계발 강의 수강으로 인정 불가                      ※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필요                      &lt;이용 경로 문구 명확화&gt;</p>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OJT 등 사내교육> ▶ 사내교육 8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요 (OJT 등) ▶ 소속회사의 직인이 포함된 교육이수 증빙자료 1부 ▶ 4대 보험 가입증명 서류 1부 中 택1 제출	<OJT 등 사내교육> ▶ 사내교육 8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요 (OJT 등) ▶ 소속회사의 직인이 포함된 교육이수 증빙자료 1부 ▶ 4대 보험 가입증명 서류 1부 中 택1 제출 ※ 법정의무교육은 해당되지 않음	p.36

## ⑤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V.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2 장학금 환수 - (2)환수 방법 - ① 보증보험 창구를 통한 환수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이행신용보증보험제도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지급신용보증보험제도 >	p.45
이행(신용)보험	지급신용보증보험	P.47

### V.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2 장학금 환수 - (2)환수 방법 - ② 재단 직접 환수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붙임 수혜약정서와 문구 통일	p.46

※ 업무처리기준 붙임 문서도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수정 및 현행화

## < 희망사다리 || 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

### 1] 사업 개요

#### I.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제한 대상> 표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lt;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제한 대상 표&gt;</p> <p>■ 2024년 대학평가(대학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24.12.13.기준, 교육부)</p> <p>※ 2025학년도 학자금지원 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을 받은 대학의 경우, 장학금 최종지급일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장학금 지원 가능 단, 지급 이후 대학이 본안 소송 패소 시 기지급한 장학금 반환</p> <p>■ 과거 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I,II유형) 환수 대상자 중 잔여 환수대상 금액이 남아있는 자</p>	<p>&lt;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제한 대상 표&gt;</p> <p>■ 20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6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p> <p>※ 2026학년도 학자금지원 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을 받은 대학의 경우, 장학금 최종지급일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장학금 지원 가능 단, 지급 이후 대학이 본안 소송 패소 시 기지급한 장학금 반환</p> <p>■ 과거 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I,II유형) 환수 대상자 중 잔여 환수대상 금액이 남아있는 자(신청마감일 기준)</p>	p.3

#### I. 사업개요 - 4. 재직 인정 기업 - 재직 인정 제외 기업 표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p> <p>-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재직 인정 제외</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p> <p>- <del>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지점 등)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del> 모두 의무재직 인정 제외</p>	p.6
<p>■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 3. 지원 유형별 의무재직 제외 업종 참고)</p> <p>-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p>	<p>■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 3. 지원 유형별 의무재직 제외 업종 참고)</p> <p>-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p>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 서 정하는 업종</p> <p>*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p>	<p>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 서 정하는 업종</p> <p>*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p> <p>※ 단,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에 따라 수탁 사업자로 지정되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행 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직인정 기업으로 분류</p>	

## ② 장학금 신청

### II. 장학금 신청 - 2. 학생 신청 - □ 신규 장학생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 증빙 서류>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	<p>○ (1학기) 심사년도 1월 1일 이후 발급서류</p> <p>○ (2학기) 심사년도 7월 1일 이후 발급서류</p> <p>※ 기준 외 서류 제출 시 심사결과는 재단의 판단에 따름</p>	p.9

### II. 장학금 신청 - 4. 수납정보 등록 - □ 대학 계좌 등록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 대학 계좌 등록</p> <p>○ 대학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전용 수납 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p> <p>-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수납 계좌와 분리된 별도 수납 계좌 개설 필요</p> <p>- 통장 사본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p> <p>※ 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 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p> <p>※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을 포함한 모든 타 장학금 계좌와 분리된 수납계좌 필요</p>	<p>□ 대학 계좌 등록</p> <p>○ 대학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전용 수납 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p> <p>- 통장 사본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p> <p>※ 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 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p> <p>- 다수 캠퍼스 운영 대학일 경우, 캠퍼스별 분리된 희망사다리 II유형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 필수</p> <p>-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을 포함한 모든 타 장학금 수납 계좌와 분리된 별도 수납 계좌 개설 필요</p> <p>※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을 포함한 모든 타 장학금 계좌와 분리된 수납계좌 필요</p>	p.14

### ③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1. 신규 장학생 심사 - (1) 대학 추천 - <수혜 횟수> 표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④ 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 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수혜횟수 표>	④ 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 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수혜횟수 표 수정>	p.15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학제별 최대 수혜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1. 신규 장학생 심사 - (1) 대학 추천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심사기준> 표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매출액 기준> ▶ 6개월간 매출액 평균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개인사업자의 경우만 적용.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765,444원)	<매출액 기준> ▶ 6개월간 매출액 평균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개인사업자의 경우만 적용. 2025년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765,444원 820,556원)	p.15, p.49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일용근로자 관련 상세 업무처리는 붙임 4. 심사요건 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p.15, p.47

####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1. 신규 장학생 심사 - (1) 대학 추천 - □ 신규 장학생 심사기준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	⑦ 수혜금액 기준 : 등록금 최소 1원 이상 발생 시 지원 가능	p.15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1. 신규 장학생 심사 - (3) 최종 재단심사 - 선발대상자 확정 및 신규장학생 최종 선발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선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선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li> <li>※ 단, 지역의 후학습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인재 선발 비중을 확대하여 선발하며, 상세 내용은 별도 선발 계획에 따름</li> </ul>	p.17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2. 계속 장학생 심사 - (1) 계속장학생 대상자 선정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lt;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자격상실기준&gt; 표 &lt;현 재직요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 당시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li> <li>▶ 기업 유형이 미확인된 경우</li> <li>▶ 심사개시일 기준 재직 여부가 미확인된 경우</li> </ul>	<p>&lt;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자격상실기준&gt; 표 &lt;현 재직요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선발 당시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del></li> <li>▶ 기업 유형이 미확인된 경우</li> <li>▶ 심사개시일 기준 재직 여부가 미확인된 경우</li> </ul>	p.19
<p>&lt;수혜금액 기준&gt;</p>	<p>&lt;수혜금액 기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 최소 1원 이상 발생 시 지원 가능</li> </ul>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2. 계속 장학생 심사 - (2) 심사요건 재확인(이의신청)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재직요건 및 의무재직 이행 관련 심사정보</li> <li>- 장학생은 현 재직기업의 유형, 규모, 업종 또는 의무재직 인정 일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확인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재직요건 및 의무재직 이행 관련 심사정보</li> <li>- 장학생은 현 재직기업*의 유형, 규모, 업종 또는 의무재직 인정 일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확인 요청</li> <li>* 최초 선발 유형으로 계속 지원, 요건 재확인(이의신청)을 통해 동일성 심사 필요</li> </ul>	p.20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2. 계속 장학생 심사 - (3) 대학 심사(추천) - □ 계속 장학생 심사기준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③ 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 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수혜횟수 표>	③ 최대 수혜 횟수 : <b>학생별</b>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 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수혜횟수 표 수정>	p.21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b>학제별</b> 최대 수혜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2. 계속 장학생 심사 - (3) 대학 심사(추천) - □ 계속 장학생 심사기준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④ 현 재직기업 -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 현재 기준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④ 현 재직기업 -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 <b>현재 심사개시일</b> 기준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b>재직 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등)이 인정될 경우,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기업 유형 유지 가능</b>	p.21

**< 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심사 기준 >**

심사항목		계속장학생 심사기준															
1	학적	→ 계속장학생 심사 학기 재학생															
2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3	<del>최대 수혜횟수</del>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는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4	<del>현</del> 재직기업	<p>→ 신규장학생 선발 당시의 재직기업과 동일한 기업 유형의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p> <p>-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등)이 인정될 경우,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가능</p> <p>* 최초 선발 유형으로 계속 지원, 요건재확인(이의신청)을 통해 동일성 심사 필요</p> <p align="center"><b>&lt; 재직 기업 유형에 따른 심사 결과 사례 &gt;</b></p> <table border="1"> <thead> <tr> <th><del>신규장학생 선발 당시</del></th> <th><del>계속장학생 심사 시</del></th> <th>심사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중소·중견기업</td> <td>중소·중견기업</td> <td>자격 유지</td> </tr> <tr> <td><b>중소·중견기업</b></td> <td><b>대기업, 비영리기관</b></td> <td><b>심사탈락</b></td> </tr> <tr> <td>대기업, 비영리기관</td> <td>대기업, 비영리기관</td> <td>자격 유지</td> </tr> <tr> <td><b>대기업, 비영리기관</b></td> <td><b>중소·중견기업</b></td> <td><b>심사탈락</b></td> </tr> </tbody> </table> <p>→ 심사개시일 기준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 재직 여부</p>	<del>신규장학생 선발 당시</del>	<del>계속장학생 심사 시</del>	심사 결과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자격 유지	<b>중소·중견기업</b>	<b>대기업, 비영리기관</b>	<b>심사탈락</b>	대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비영리기관	자격 유지	<b>대기업, 비영리기관</b>	<b>중소·중견기업</b>	<b>심사탈락</b>
<del>신규장학생 선발 당시</del>	<del>계속장학생 심사 시</del>	심사 결과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자격 유지															
<b>중소·중견기업</b>	<b>대기업, 비영리기관</b>	<b>심사탈락</b>															
대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비영리기관	자격 유지															
<b>대기업, 비영리기관</b>	<b>중소·중견기업</b>	<b>심사탈락</b>															
5	의무제직 이행	<p>→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제직을 완료한 자</p> <p>- 단, 의무제직 미완료 자가 장학생 이의신청 기간 내 미 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 전액 반환 시 계속장학생 선발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심사기준일</th> <th>이행 기한 만료일</th> </tr> </thead> <tbody> <tr> <td>1학기 장학금</td> <td>심사년도 1월 1일</td> <td>심사년도 12월 31일</td> </tr> <tr> <td>2학기 장학금</td> <td>심사년도 7월 1일</td> <td>차년도 6월 30일</td> </tr> </tbody> </table>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장학금	심사년도 1월 1일	심사년도 12월 31일	2학기 장학금	심사년도 7월 1일	차년도 6월 30일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장학금	심사년도 1월 1일	심사년도 12월 31일															
2학기 장학금	심사년도 7월 1일	차년도 6월 30일															

#### 4 장학생 의무사항

#### IV. 장학생 의무사항 -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 자격상실 효과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 자격상실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상실 이후에는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불가</li> <li>○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의무는 소멸되지 않고, 반환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 이행분에 대한 장학금 반환</li> <li>-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의 경우는 재단과 반환약정 체결 후 가상 계좌를 통해 재단으로 직접 반환</li> </ul>	<p>□ 자격상실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상실 이후에는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불가</li> <li>○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의무는 소멸되지 않고, 반환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 이행분에 대한 장학금 반환</li> <li>- <del>의무재직 불이행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의 경우는 재단과 반환약정 체결 후 가상 계좌를 통해 재단으로 직접 반환</del></li> </ul>	p.26

#### IV. 장학생 의무사항 - 3. 의무재직 이행 - (2) 의무재직 인정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 의무재직 이행 심사 및 재직기간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재직 상시 보고 시, 가족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 정보(이름, 생년월일) 필수 입력</li> <li>○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li> <li>-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li> </ul>	<p>□ 의무재직 이행 심사 및 재직기간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재직 상시 보고 시, 가족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 정보(이름, 생년월일) 필수 입력</li> <li>○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li> <li>- <del>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del></li> <li><b>【인정 증빙서류】</b></li> <li>1. (재직여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li> <li>2. (재직기간)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까지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 기존 지침을 적용하여 재직증명서를 재직기간 관련 서류로 제출 가능</li> <li>*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li> </ul> </li> </ul>	p.28

## 5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V.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 장학금 반환 - (3) 반환 방법 - <장학금 환수약정 체결 업무처리기준 표>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장학금 환수약정 체결 업무처리기준>	삭제	p.33

#### < 장학금 환수약정 체결 업무처리기준 >

##### □ 시기

- 정기 : 의무재직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 수시 : 장학생이 자발적 상환 요청 시

##### □ 방법

- 환수 약정을 통한 상환
  - 의무재직 유예기간 만료자 : 장학생이 직접 환수약정 체결 후 상환
  - ※ 환수 기한: 의무재직 유예기간 종료 익일부터 1년 이내 환수  
단, 환수 약정 체결은 환수 기한 내 체결해야하며,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의무 재직 유예기간 종료 익일로부터 1년 이내 환수가 완료되어야함
  - 의무재직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 재단에서 환수대상자로 지정한 후 장학생이 직접 환수약정 체결하여 상환
  - ※ 환수약정 체결 이후, 의무재직 상시 보고는 불가함

##### □ 상환 방법

- ① 취업연계 상담센터(☎1800-0499)로 연락하여, 환수대상자 지정 요청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자의 경우, 환수대상자 지정 요청 불필요
-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환수약정 체결 및 가상계좌 채번
- ③ 채번된 가상계좌로 환수 진행

#### 【 환수약정 체결 방법(장학생용) 】

→ 환수약정 체결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 환수관리 → 환수약정

V.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2. 장학금 환수 - (1) 장학금 환수 사유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① 의무재직 유예기간 종료자 - 단, 환수약정을 체결한 자는 약정기간 동안 환수가 유예됨 ② 환수 약정 종료자 - 장학금 환수 약정 기간(1년)이 모두 종료된 자 ③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사유에 해당할 경우 ④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del>① 의무재직 유예기간 종료자</del> <del>- 단, 환수약정을 체결한 자는 약정기간 동안 환수가 유예됨</del> <del>② 환수 약정 종료자</del> <del>- 장학금 환수 약정 기간(1년)이 모두 종료된 자</del> ②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사유에 해당할 경우 ③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p.33

V.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2. 장학금 환수 - (2) 장학금 환수 방법 및 절차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방법  ○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환수대상자로 지정 - 즉, 환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대상자가 됨  ○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환수 사실(금액 등) 및 환수 절차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 최종 반환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환수대상자 지정 후 반환약정 체결 불가  ○ 보험 청구 후 보험사에서 재단에 보험금 지급(대위변제)을 하기 전까지 장학금을 반환한 경우, 환수대상자에서 제외 - 환수대상자의 통보 시 전용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최종 반환기한 내 반환을 완료하면 환수 절차를 종료하면 됨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방법  ○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환수대상자로 지정 - 즉, 환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대상자가 됨  ○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del>환수 사실(금액 등)</del> 환수 정보(금액, 가상계좌 등) 및 환수 절차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등기우편 발송) <del>- 최종 반환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del> ※ 환수대상자 지정 후 반환약정 체결 불가  ○ 보험 청구 후 보험사에서 재단에 보험금 지급(대위변제)을 하기 전까지 장학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del>환수대상자에서 제외 환수 절차 종료</del> <del>- 환수대상자의 통보 시 전용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최종 반환기한 내 반환을 완료하면 환수 절차를 종료</del>	p.33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p>하면 됨</p> <p>- 재단 통보 이전 상환 희망시 취업 연계 상담센터(1800-0499)로 연락 하여, 가상계좌 채번 후 채번된 가상계좌로 상환 가능</p>	

V.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2. 장학금 환수 - ②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 (2023년 1학기 이전 선발자(보험가입자))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관련
이행(신용)보험	지급신용보험	p.36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이행신용보증보험제도 >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지급신용보증보험제도 >	

※ 업무처리기준 붙임 문서도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수정 및 현행화